정관 개정안 302

궁은 글꼴의 취소선은삭제된 내용을 나타냄굵은 글꼴의 밑줄은 추가된내용을 나타냄

제 6조 임원

노조 자원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기 위해 총괄 부회장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도록 제 6조 1항을 수정한다.

제 1항. 국제 노조의 임원은 국제 회장, 국제 사무 총장, 7 5명의 전임 총괄부회장, 25명의 부회장(최소 2명 이상은 캐나다 지부 조합 회원) 및 40명의 집행위임원(최소 2명 이상은 캐나다 지부 조합 회원이며 1명은 퇴직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 회장, 비서-재무국장 및 7 5명의 총괄 부회장은 대부분국제 컨벤션에서 모인 모든 대표단이 선출한다. 캐나다 부회장 2명과 캐나다집행위임원 2명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된다. 부회장 및 집행위임원은 퀘벡주이외의모든 주에서 지명및 선출된다. 그러나, 퀘벡주의 부회장과 퀘벡주의집행위임원이동일지구노조의회원이아닌경우에한해부회장및 집행위임원은 퀘벡주에서만지명및 선출된다. 캐나다부회장및 집행위임원은 본정관및해당법률에따라선출된대표단으로구성된캐나다협의회에의해컨벤션에서선출되며이것은국제노조임원이선출되는국제컨벤션이전90일이내에개최된다.기타모든부회장과집행위임원(퇴직회원포함)은대부분지명되고선출된다.